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종성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5645

발의연월일: 2022. 5. 18.

발 의 자:이종성・구자근・김용판

박대수 · 서일준 · 이명수

정우택 · 정운천 · 조명희

성일종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형태에 사용되는 버스를 대폐차하는 경우 저상버스로 도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 휠체어 탑승설 비를 장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 음.

하지만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 설치 시 노선버스만 지원이 되고 있어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경우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임.

이에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장벽을 낮추고, 이동 편의를 더욱 증진하 고자 함(안 제14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조의2(전세버스의 이용 보장) ①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3 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전세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(이하 이 조에서 "전세버스 운송사업자"라 한다)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수 있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14조의2(전세버스의 이용 보장
	등) ①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
	법」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
	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
	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
	의 전세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
	는 자(이하 이 조에서 "전세버
	스 운송사업자"라 한다)는 교
	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
	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
	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
	을 설치할 수 있다.
	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
	항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
	치할 경우 전세버스 운송사업
	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
	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
	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